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
------------	-----

발의연월일 : 2016. 6. 22.

발의자 :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박주선 · 박광온 · 이춘석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이용주 · 박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혜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혜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승계”를 “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계자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여야 한다.